

<출입국체류관리청> 체류자격소지자 재입국예정 신청에 대해

2020년 11월 1일 이후 재입국하는 외국인분들은 재입국예정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메일에 의한 신청, 문의 등의 접수는 종료되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현재, 긴급사태선언 발표에 수반되는 검역조치 강화에 의해, 긴급사태의 해제가 발표될 때까지,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재입국자·귀국자에 대해, 출국전 검사 증명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 (일본어).

또한 재입국 상륙신청 전 14일 이내에 입국거부대상 국가·지역에서 체류하신 분은 체류 국가·지역에서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19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래의 양식을 사용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기입 (전문 영어로 기재) 한 후,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주십시오. 만일 임의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채취검체, 검사법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하신 외국인 분이 재입국할 때 필요한 코로나 19 검사증명 양식](https://bit.ly/35q81Hj) [word] <https://bit.ly/35q81Hj>

현재 입국거부대상 국가·지역은 외무성 또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